

울산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1가단697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민규(소송구조)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박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730,5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그중 7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 계약’이라 한다)은 해지되었으며, 10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정상 계약’이라 한다)은 정상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상 계약과 관련하여, 2018. 2. 7. 기준으로 보험료 합계 75,696,090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상황임에도 피고가 2017년경 위 정상 계약을 강제로 실효시켜 원고는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34,808,5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동액 상당의 돈을 배상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내지 2015. 10.경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상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2017. 11. 15. 및 2017. 11. 21. 그때까지의 연체보험료 합계액 33,246,07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합계액 1,562,480원 합계 34,808,550원을 지급한 사실(이는 2017. 11. 15.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7. 11. 15. 및 2017. 11. 21. 합계 34,826,3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상 계약의 효력이 부활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정상 계약의 보험료를 연체한 바 없이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강제로 실효시키고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료 미납은 피고가 실제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 처리를 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대출 실행 금액에서도 부당하게 이자를 공제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하나 아무 근거 없다).

3. 원고는, 2021. 4. 5.기준 이 사건 정상 계약 중 6건의 보험계약 대출금잔액이 합계 30,18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갑 제6호증),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대출금은 19,258,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인 10,922,000원을 이자 등으로 위법하게 과다 수취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을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대출 당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운서

별지

표

계약	보험종별	특약사항	계약관계자	무관할수입지	보험계약대상	이체계좌	수급사유	해약금금	VOC			
증권번호	상품명	연계	상태	계약일자	종류	가입액(원/USD)	보험료	보험유지현황	보험료납입현황	보기	납기	주거
		계약자	정상	2013-12-31	KRW	10,000	119,200	2023-04/113	2023-04/113	999	20	월납
		계약자	정상	2013-12-31	KRW	20,000	148,500	2023-04/113	2023-04/71	999	20	월납
		계약자	정상	2013-12-26	KRW	20,000	251,600	2023-04/113	2023-04/76	999	20	월납
		계약자	정상	2013-10-30	KRW	5,000	60,700	2023-04/115	2023-04/115	999	20	월납
		계약자	정상	2013-07-30	KRW	5,000	112,500	2023-04/118	2023-04/90	999	15	월납
		주최보험자	정상	2013-07-30	KRW	5,000	112,500	2023-04/118	2023-04/90	999	15	월납
		계약자	반송	2013-07-09	KRW	5,000	112,500	2013-07/1		999	15	월납
		주최보험자	반송	2013-07-09	KRW	5,000	112,500	2013-07/1		999	15	월납
		계약자	정상	2012-06-31	KRW	1,000	56,600	2023-04/129	2023-04/129	999	36	월납
		주최보험자	정상	2012-06-31	KRW	1,000	56,600	2023-04/129	2023-04/129	999	36	월납
		계약자	정상	2012-06-31	KRW	10,000	54,000	2023-04/129	2023-04/129	25	23	월납
		주최보험자	정상	2012-06-31	KRW	10,000	54,000	2023-04/129	2023-04/129	25	23	월납
계약자	정액월회	2012-06-31	KRW	11,000	59,400	2012-06/1	2012-06/1	25	23	월납		
주최보험자	정액월회	2012-06-31	KRW	11,000	59,400	2012-06/1	2012-06/1	25	23	월납		
계약	보험종별	특약사항	계약관계자	무관할수입지	보험계약대상	이체계좌	수급사유	해약금금	VOC			
증권번호	상품명	연계	상태	계약일자	종류	가입액(원/USD)	보험료	보험유지현황	보험료납입현황	보기	납기	주거
		계약자	정상	2012-05-09	KRW	1,500	60,350	2023-04/132	2023-04/132	59	20	월납
		주최보험자	정상	2012-05-09	KRW	1,500	60,350	2023-04/132	2023-04/132	59	20	월납
		계약자	정액월회	2012-05-08	KRW	1,500	40,550	2012-05/1	2012-05/1	59	39	월납
		주최보험자	정액월회	2012-05-08	KRW	1,500	40,550	2012-05/1	2012-05/1	59	39	월납
		계약자	확약	2012-02-29	KRW	1,000	310,000	2015-08/43	2015-08/43	999	999	월납
		주최보험자	확약	2012-02-29	KRW	1,000	310,000	2015-08/43	2015-08/43	999	999	월납
		계약자	정상	2011-10-04	KRW	1,000	59,900	2023-04/139	2023-04/139	999	39	월납
		주최보험자	정상	2011-10-04	KRW	1,000	59,900	2023-04/139	2023-04/139	999	39	월납
		계약자	확약	2011-07-23	KRW	1,000	497,500	2015-04/46	2015-04/46	999	999	월납
		주최보험자	확약	2011-07-23	KRW	1,000	497,500	2015-04/46	2015-04/46	999	999	월납
		계약자	확약	2010-09-30	KRW	1,000	497,500	2014-09/49	2014-09/49	999	999	월납
		주최보험자	확약	2010-09-30	KRW	1,000	497,500	2014-09/49	2014-09/49	999	999	월납
		계약자	확약	2010-08-31	KRW	500	100,000	2015-10/63	2015-10/63	999	999	월납
		주최보험자	확약	2010-08-31	KRW	500	100,000	2015-10/63	2015-10/63	999	999	월납
		계약자	확약	2010-08-03	KRW	2,000	52,800	2013-12/41	2013-12/41	15	10	월납
		계약자	확약	2010-05-17	KRW	1,000	497,500	2014-03/47	2014-03/47	999	999	월납
		주최보험자	확약	2010-05-17	KRW	1,000	497,500	2014-03/47	2014-03/47	999	999	월납
		계약자	확약	2010-05-13	KRW	500	150,000	2014-06/52	2014-06/52	999	999	월납
		주최보험자	확약	2010-05-13	KRW	500	150,000	2014-06/52	2014-06/52	999	999	월납
		계약자	정상	2010-04-19	KRW	5,000	259,160	2023-04/157	2023-04/157	999	15	월납
		주최보험자	정상	2010-04-19	KRW	5,000	259,160	2023-04/157	2023-04/157	999	15	월납

